人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람

제1027호

2018. 7. 1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8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8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6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47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공					
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2>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삼 척 시 보 제1027호

삼척시 고시 제 2018 - 83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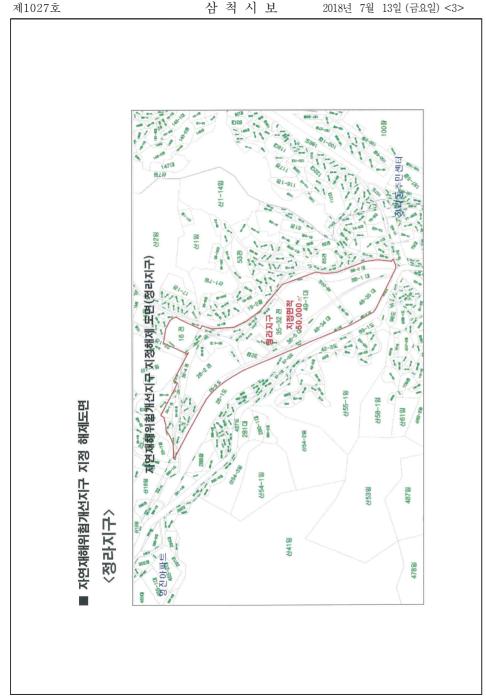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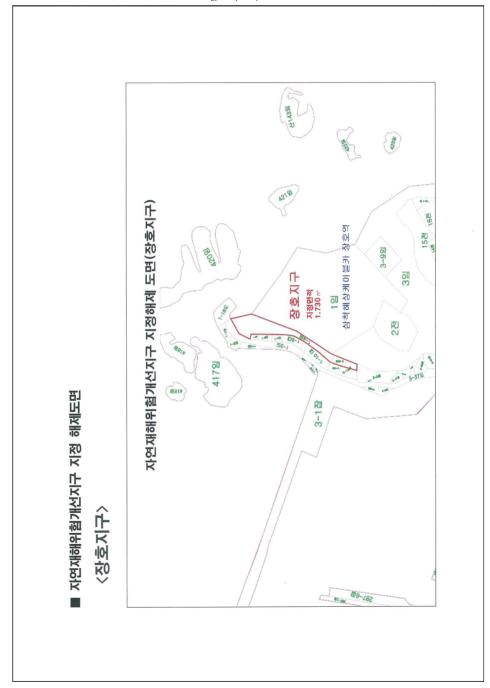
2) 7 m	ما جا	해 제 내 용			all of the	비고	
지구명	위 치	유 형	둥급	면적(㎡)	해제사유	(지정일자)	
정라지구	삼척시 정상동 49-1번지 일원	침수위험	나	50,000	재해위험 해소	2004.09.07	
장호지구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1번지 일원	붕괴위험	나	1,730	재해위험 해소	2015.04.03	
도계3리지구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08-5번지 일원	붕괴위험	나	2,275	재해위험 해소	2015.04.03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각 1부

2018년 7월 6일

삼 척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5>

도면(도계3리지구) 429 대 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치정해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도계3리지구>

삼척시 고시 제2018 - 88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7. 13.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078 외79건

종전주소	<b>こ</b>	로명주소	5	ĦÌ	77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u> </u>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7,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7>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2-12)	도로명	주소			도로명		
번	<b>종</b> 전주소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고	
1	강원도 삼척시 미 로면 강원남부로 3782-5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반 영		
2	강원도 삼척시 하 장면 갈전리 40-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078	20180713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3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 264-19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 사 용(지역중심도 로)		
4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 22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 사 용(지역중심도 로)		
5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 197-23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 사 용(지역중심도 로)		
6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우회로 48-3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8		
7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우회로 48-2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시 가지우회도로활 용		
8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우회로 48-1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시 가지우회도로활 용		
9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우회로 48-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시 가지우회도로활 용		
10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우회로 46-27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시 가지우회도로활 용		
11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우회로 46-9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용 -		
12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우회로 46-15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시 가지우회도로활 용		

순	272,	도로명	주소			도로명	비
번	<b>종전주소</b>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고
13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상로 147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도 계리,상덕리) 복 합활용	
14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맹방해변로 5-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맹방해수욕장명 칭활용	
15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미근로 1676-6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 명칭활용(미로, 근덕)	
16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미근로 168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 명칭활용(미로, 근덕)	
17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미근로 1723-3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 명칭활용(미로, 근덕)	
18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미근로 1713-5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 명칭활용(미로, 근덕)	
19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방재로 329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방재단지 예정 지 명칭 활용	
20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삼척로 416-44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 로명활용	
21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삼척로 3443-1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 로명활용	
22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삼척로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Z-1Z )	도로명~	주소			도로명	비
번	종전주소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고
	강원도 삼척시 원					구7번국도연결	
23	덕읍 삼척로 1194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구간으로기존도	
						로명활용	
	강원도 삼척시 근					구7번국도연결	
24	덕면 삼척로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구간으로기존도	
	2110-18					로명활용	
	강원도 삼척시 미					문화재(영경묘)	
25	로면 영경로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명칭 활용	
	337-32					778 27	
	강원도 삼척시 미					문화재(영경묘)	
26	로면 영경로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명칭 활용	
	10-10						
	강원도 삼척시 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행정구역명(옥	
27	덕읍 이천리	옥원이천로 1015-22	20180713		20090626	원,이천)복합활	
	744-1	역 전략전로 1013-22				용	
	강원도 삼척시 원					행정구역,시설	
28	덕읍 임원항구로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물명칭활용	
	33-8					E 0 0 E 0	
	강원도 삼척시 원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행정구경,위치 활용	
29	덕읍 호산중앙로				20090626		
	5-10						
	강원도 삼척시 원			,			
30	덕읍 고포월천길	폐지	20180713	건물절거	20090710	지역명칭 반영	
	259-1						
2.4	강원도 삼척시 근	-111	20100512	-) T =) -)		31 2 2 2 2 3 3 5	
31	덕면 광태길	폐지	20180713	선물절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	42-10						
32	강원도 삼척시 근	폐지	20180713	거무천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2	덕면 교곡길 44	<i>≯</i> ∥/1	20100713	[신란'편기	20090020	3 6 1 7 6/16	
	7 0 - 1 - 1 - 7						
33	강원도 삼척시 근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덕면 교곡길 82						
	강원도 삼척시 근						
34	덕면 교곡길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81-46						
				•			

순	도로명주소				도로명		
번	종전주소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고
35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대진길 104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지역명(동막리 마을명) 사용	
36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덕산리 254-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17-19	20180713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 용(덕산해변길 분기)	
37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덕산해변1길 61-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 용(덕산해변길 분기)	
38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느티로2 길 25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지형 지물활용(도계 느티로분기)	
39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3길 7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40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3길 6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41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3길 6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42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3길 5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43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3길 44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44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3길 3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45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3길 3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도계로분기)	
46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도계로3길 34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b>종전주소</b>	도로	명주소			도로명	벼
번	중신구조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47	강원도 삼척시 미 로면 동산길 458-1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48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맹방해변로1 길 52-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 칭사용(맹방해 변로분기)	
49	강원도 삼척시 미 로면 삼거리길 121-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 사 용	
50	강원도 삼척시 미 로면 상정길 1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51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신남길 83-33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지역명(마을명) 사용	
52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옥원길 64-75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칭사 용(옥원이천로 분기)	
53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옥원길 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칭사 용(옥원이천로 분기)	
54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임원본촌길 29-2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마을 명복합활용	
55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임원안1길 7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 용(임원안길분 기)	
56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임원안2길 30-2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 용(임원안길분 기)	
57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임원안4길 11-1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 용(임원안길분 기)	
58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임원안길 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위 치활용	

순	<b>종전주소</b>	도로명	주소		도로명		
번	중선구조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고
59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장호1길 33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 칭사용(장호길 분기)	
60	강원도 삼척시 근 덕면 장호항길 56-9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시설 물(항구)복합활 용	
61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강변길 43-1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지 형지물활용	
62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강변길 26-2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지 형지물활용	
63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남2길 3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전두남길분기)	
64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안1길 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전두안길분기)	
65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안길 39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 위치	
66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안길 37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 위치	
67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안길 3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 위치	
68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안길 8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 위치	
69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안길 9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 위치	
70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전두안길 9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 위치	

순	2721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번	종전주소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고
71	강원도 삼척시 미 로면 하정안길 43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지역 위치복합활용	
72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호산1길 131-5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73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호산1길 49-3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삼척로분기)	
74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호산1길 1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75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호산2길 55-6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76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호산2길 17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77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호산3길 45-3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삼척로분기)	
78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호산3길 13-2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삼척로분기)	
79	강원도 삼척시 원 덕읍 호산3길 13-1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삼척로분기)	
80	강원도 삼척시 도 계읍 홍전길 38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홍 전,전두)복합활 용	
		०)	하	여	백		

판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T T	1												
	o Te		지역적 특성반영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행정구역명 사용(지역중심도로)	행정구역명 사용(지역중심도로)	행정구역명 사용(지역중심도로)	행정구역명,시가지우희도로활 용	행정구역명,시가지우희도로 <b>활</b> 용	행정구역명,시가지우희도로활 용	행정구역명,시가지우희도로활 용	행정구역명,시가지우희도로활 용	행정구역명,시가지우희도로활 용	행정구역명,시가지우희도로활 용
	1 1 1 1 1	言い エスエン	20090807	20090807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110	上人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균	7 210	포스턴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80 권	폐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078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圖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충전주소	계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782- 5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0-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64-1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97~2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희로 48-3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48-2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48-1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희로 48-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희로 46-2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희로 46-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46-15
	٦ ٦	녀	-	2	m	4	2	9	7	00	6	10	11	12
	II F	₽ F	폐기	파	國刀	圖刀	圖刀	圖刀	圖刀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15>

제1027호

행정구역명(도계리,상덕리) 복 합활용	맹방해수욕장명칭활용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명청활용(미로, 근덕)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명청활용(미로, 근덕)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방재단지 예정지 명칭 활용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로명활용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로명활용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로명활용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로명활용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로명활용	문화재(영경묘) 명칭 활용	문화재(영경묘) 명칭 활용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폐지	폐지	圓刀	周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周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14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5-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676-6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68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2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13-5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방제로 32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16-4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443-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5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19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0-1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337~3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10-10
13	4	15	16	17	18	19	50	21	22	23	24	52	56
ᇤ고	圖刀	폐기	폐기	폐기	뼲	폐기	뼲기	폐기	뼲기	폐기	폐기	폐지	폐기

2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744-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15-22	20180713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 용
2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33-8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시설물명칭활용
2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중앙로 5-10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경,위치활용
 3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고포월천길 259-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710	지역명칭 반영
 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길 42-10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44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82	周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81~46	周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대진길 104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지역명(동막리마을명) 사용
3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54-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17-19	20180713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덕산해변길 분기)
3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61~6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덕산해변길 분기)
3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2길 25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지형지 물활용(도계느티로분기)
3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7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4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68	層入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17>

제1027호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도계로분기)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맹방해 변로분기)	행정구역명 사용	행정구역명사용	지역명(마을명)사용	행정구역명칭사용(옥원이천로 분기)	행정구역명칭사용(옥원이천로 분기)	행정구역,마울명복합활용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20090626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건물철거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20180713
폐지	폐지	周지	폐지	폐지	周지	眉刀	崩지	폐지	周지	崩ス	周지	周지	周刃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6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5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4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3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3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3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458-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1길 52-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길 121-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길 1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길 83~3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길 64-7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길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본촌길 29-21
4	45	43	4	45	46	47	84	49	20	51	52	53	24
텔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單工	폐기	폐기	폐기	ᇳ고	폐기	폐기

뼲기	5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7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 기)
國刀	5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2길 30-26	圖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 기)
폐기	5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4길 11-11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 기)
ᇳ고	5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위치활용
ᇤ고	5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1길 33	眉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장호길 분기)
필	0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56-9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시설물(항구)복합 <u>활</u> 용
폐기	1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강변길 43-10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지형지물활용
필고	6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강변길 26-22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지형지물활용
폐기	6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남2길 36	周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전두남길분기)
폐기	6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的길 6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전두안길분기)
폐기	9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39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폐기	9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37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폐기	6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3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폐기	8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88	崩入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19>

제1027호

뻬기	6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9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폐기	7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9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폐기	1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안길 43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지역위치복합활용
페기	7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131-5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ᇤ기	7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49-3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폐기	7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11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폐기	7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2길 55-62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폐지	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2길 17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폐기	7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45-3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폐지	7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13-2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폐지	7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13-10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삼척로분기)
圖지	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홍전길 388	폐지	2018071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홍전,전두)복합활 용

삼척시 공고 제2018-547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 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11일

## 삼 척 시 장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개정이유
  -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주차시설 부족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의 주차난 가속화 현상을 막고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O 부설주차장의 설치 강화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별표 5)
- 4. 입법예고 기간 : 2018. 7. 11. ~ 2018. 7. 31.
- 5. 의견제출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삼척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033-570-3474, FAX : 033-570-3145)

제1027호 삼 척 시 보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2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주소: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교통행정과

- 전화: 033 - 570 - 3474 - 팩 스 : 033 - 570 - 3145 - E-mail: jyc8227@korea.kr

#### 6. 참고사항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서식 1부.

삼 척 시 보 <22>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제1027호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	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	36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대 상	지 역 별 기 준
시 실 풀	도 시 지 역	비 도 시 지 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시설면적/67㎡)	○시설면적 84m'당 1대 (시설면적/84m')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 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 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5㎡당 1대 (시설면적/12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m'당 1대 (시설면적/134m')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100m'당 1대 또는 호실 당 0.7 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시설면적 168㎡당 1대 (시설면적/168㎡)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100㎡당1대 또는 호실 당 0.7 대로 하되,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20㎡ 이하: 1대 ○시설면적 120㎡ 초과:1대에120㎡ 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20㎡)/100㎡}]	○시설면적75㎡초과 120㎡이하: 1대 ○시설면적 120㎡초과:1대에120㎡ 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2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 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 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 수를 따른다. 이 경우 전용면적 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 법을 따르며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단가구주택과 공동주택(기숙사 제 외)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전용면적이 85㎡ 이하는 세대당 1.5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50㎡당 1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 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 수를 따른다. 이 경우 전용면적 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 법을 따르며 1호실을 1세대 본다. ○다1가주택과 공동주택(기속사 제 외)의 경우 전용면적이 80㎡ 이하는 세대당 1대, 전용면적이 85㎡ 이하는 세대당 1.5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50㎡당 1대

	이산으로 한다. 이 때 합산한 전 체 주차대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결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 함체 1호에 따른 원류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8대/세대당 전용먼 적이 30m' 미만인 경우에는 0.6 (비) 이산이 모도록 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한다. 이 때 합산한 전 체 주치대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골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원름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8대(세대당 전용면 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6 데)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 장	○골프장: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12명당 1대 ○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	○골프장: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15명당 1대 ○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 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40 m'당 1대 (시설면적/240 m')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80 m² 당 1대 (시설면적/280 m²)	○시설면적 350 m 당 1대 (시설면적/350 m)
9. 학생용 기숙사(신설)	○시설면적 300 m'당 1대 (시설면적/300 m')	○시설면적 400 m²당 1대 (시설면적/400 m²)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시설면적 250㎡당 1대 (시설면적/250㎡)

#### 비고

-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성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 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 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판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변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교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7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는 대수로 한다.

-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함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물 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 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 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 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기준은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 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 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 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률의 용도변경 또는 중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 15.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27호

제2조(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 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26>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종류 및 설치기준	지역별기준	비도시지역	○시설면적 84㎡당 1대 (시설면적/84㎡)	(시설면적 125m'당 대(시설면적 125m)	○시설면적 166 (시설면적/16 ) ○숙박시설 중 실은 시설면전 1 설은 시설면전 대 또는 호실	2 한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시설면적75㎡초과 120㎡이하: 1대
개 정 안	설치대상시설물)	설치대상	도 시 괴	○시설면적 67㎡당 1대 (시설면적/67㎡)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3 (시설면적/13 ○숙박시설 중 설은 시설면전 대 또는 호실	<u>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u> <u>많은 것을 적용한다.</u> ○시설면적 50㎡ 초과 120㎡이하: 1대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제15조 관련	미	ĮU.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 의한다.), 중교시설, 판매시설, 문수시설, 의교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 다.), 운동시설(필급장, 필라연 다.) 업무시설(의국공발, 및 지스텔은 제외한다.), 방송동신	3, 제1층 근립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법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층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단독주택(다기구주택은 제외 한다)
	종류 및 설치기준	지역별기준	비도시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50㎡ 5 1대 (시설면적/150㎡)	이시설면적 200m'당 1대 (시설면적/200m')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1대 에150㎡를 초과하는 100
뺭	설치대상시설물)	설치대상	도 시 괴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120㎡)	이시설면적 160m'당 1대 (시설면적/160m')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1대 예150㎡를 초과하는 100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제15조 관련	3	< ≥un Hu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 위한다.), 청교기설, 판매시설, 위한다.), 청교기설(공학사명)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의한 다.), 요중시설(골관장 크판면 다.), 업무시설(일구장 및 오 프스텔은 제외한다.), 영우시설(의국장관 및 오 지스텔은 제외한다.), 영송동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ol> <li>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한다)</li> </ol>

○시설면적 120㎡ 초과:1대 에12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20	○ <u>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u> 「 <u>주택건설기준 등에</u> 관한 규정 제27조제1		택의 전용면적 스 명 마르며 1호실 대로 본다.	(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이 60n 세대당 1대, 전	85m" 이야는 세대당 1.5 대, 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는 경우 50m'당 1	설계 주소 어머니는 아무무로	- Bandal	제내명 수작내수가 0.8 대세대달 전용명적이 30 m, 미만인 경우에는 0.6 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 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골프정: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15명당 1대
이시설면적 120㎡ 초과:1대 에12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	173	○ <u>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u> 「 <u>주택건설기준 등에</u> 관한 규정,제27조제1	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를 따른다. 이 경 오 저용여저의 고도조	의 전용면적 신 따르며 1호실 로 본다.	S 8 8	85m" 이이는 세대당 1.3 대, 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는 경우 50m"당 1	제 주차 하 작년 한 대로	다. 다만, 「주택법 시행 명,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류형 주택은	세내당 주자내주가 0.8 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 미만인 경우에는 0.6 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 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골 프장: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2명당 1대
		<ol> <li>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 피스텔</li> </ol>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 영장, 관람장
m'당 1대를 더한 대수 [1편(시설면적+150m')/100m'}]	27.3	항에 따라 산정된 주 차대수,이 경우 다가 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골프 작:1 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탄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	내 ○관람장: 정원 100명당 1 대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190	○ '수맥건살시판 관한 규정」제27조	항에 따라 산정된 주 차대수.이 경우 다가 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내 ○관람장: 정원 100명당 1 대	○시설면적 280㎡당 1대 (시설면적/280㎡)	○시설면적 320㎡당 1대 (시설면적/320㎡)	○시설면적 240㎡당 1대 (시설면적/240㎡)		
	수어			사 어		, 공장(아파트형은 발전시설				

그리장: 정원 100명당 1대   그리랑자 전원 100명당 1대   그리랑자 전원 100명당 1대   지설면적 280m 당 1대   지성면적 280m 당 1대   지성면적 280m 당 1대   지성면적 280m 당 1대   지성면적 400m 당 1대   지성면적 400m 당 1대   지성면적 400m 당 1대   지성면적 400m 당 1대   지성면적 280m 당	개 정 안	관한비고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용되는 지 있는 시설물 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 비고 15 (신설)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지설을 말한다.
	(참 (약	비고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 준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의견제출자 :

3 -3 -3	검 토	의 견
제 정 안 ㅡ	수정안	검토사유
-		
		8